



“CM, 혁신을 품고 가치를 키우다”

## 한 국 CM 협 회

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

참 조 CM담당본부장

제 목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일부개정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제25차 정기총회(2022. 3. 24)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(2022. 7. 21)를 득한 개정정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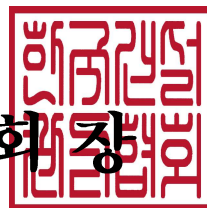
7.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(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도 포함한다)로부터 수탁하거나 협력하는 업무의 수행

부 칙

이 정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 :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1부. 끝.

한 국 CM 협 회



본부장 천 금 자

시행 운영지원본부-62 (2022. 7. 22)

우 066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

전화 02-585-7092

전송 02-585-2689

<http://www.cmak.or.kr>

[cm@cmak.or.kr](mailto:cm@cmak.or.kr)

# 정 관



**한국CM협회**

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

#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

제정 1997. 3. 27  
개정 1997. 6. 19 전문개정  
1998. 5. 8  
1999. 7. 20 전문개정  
2000. 3. 29  
2001. 3. 7  
2002. 3. 13  
2003. 3. 20  
2005. 3. 9.  
2007. 2. 26.  
2012. 4. 9.  
2013. 5. 1.  
2022. 7. 2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(약칭 한국CM협회라 한다. 이하 협회라 한다)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(약칭CMAK라 한다)로 표기한다. (2007. 2. 26 개정)

**제2조(목적)** 협회는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, 건설사업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확대·보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건설사업관리의 이론체계확립을 위한 조사연구
2.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급
3. 건설사업관리의 실용화 방안구축을 위한 산·학협동활동
4. 관련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선건의
5. 인력 및 기술의 개발관리
6. 관련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
7.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(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도 포함한다)로부터 수탁하거나 협력하는 업무의 수행 (2002. 3. 13, 2022. 7. 21개정)
8. 기타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

## 제 2 장 회 원

**제5조(회원)** ①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
1. 일반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영위 하는 자 (2003. 3. 20, 2007. 2. 26, 2013. 5. 1 개정)
2.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일반회원 이외의 자 (2003. 3. 20, 2007. 2. 26 개정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회원의 가입)**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이 된다.  
(2007. 2. 26 개정)

③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5년간은 회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(2005. 3. 9 신설)

④협회는 회원이 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(2005. 3. 9 개정)

**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 ①회원은 이 정관 및 다른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② 회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회원의 품위보전
2. 정관 및 관련규정의 준수
3. 회비납부
4. 기타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수

**제8조(회원의 자격정지등)** ①회원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.

② 회원이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위는 상실된다.

### 제 3 장 임 원 등

**제9조(임원)** 협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. (2000. 3. 29 개정)

**제10조(임원의 선임)** ①회장은 총회가 선임한다. (2003. 3. 20 개정)

②비상임부회장은 비상임이사중에서,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.

(2000. 3. 29, 2003. 3. 20 개정)

③비상임이사와 감사는 회원(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)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.

(2000. 3. 29 개정)

**제11조(임원의 임기)**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(2001. 3. 7, 2003. 3. 20 개정)

②삭제 (2001. 3. 7, 2003. 3. 20 개정)

③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임원의 임무)**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 전체를 통할한다.

②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서는 비상임부회장, 상임부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. 이경우 비상임부회장은 연장순으로 한다.

④이사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2(지회장)** ①지회장은 총회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지회장은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(2003. 3. 20 본조신설)

**제13조(대의원)** 협회는 특별회원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을 두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2007. 2. 26 개정)

**제14조(감사의 직무)** ①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.

1. 재산상황
2. 업무집행상황

②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.

## 제 4 장 총 회 등

**제15조(총회)**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**제16조(총회의 소집)**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(2000. 3. 29 개정)

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18조에 따른 총회구성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 (2007. 2. 26 개정)

③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3. 회장,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
4. 협회의 해산
5.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6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

**제18조(의사정족수 및 의결방법)** ①총회 일반회원(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) 및 특별회원(대의원에 한한다)을 합한 수(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)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(2007. 2. 26, 2012. 4. 9 개정)

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,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2007. 2. 26, 2012. 4. 9 개정)

③총회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총회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19조(서면결의)** 회장은 총회의안(정관의 변경, 회장의 선임, 협회의 해산은 제외 한다)이 긴급을 요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20조(특별회원총회)** ①특별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그 의장은 특별회원중 연장자가 된다.

②특별회원총회는 대의원을 선출한다.

③특별회원총회는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회장은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 (2007. 2. 26 개정)

**제21조(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회원 자신에 관한 것일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

**제22조(총회의 의사록)**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·출석한 부회장·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이 사 회

**제23조(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)**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

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④이사회의 의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기타 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(2001. 3. 7 개정)

**제24조(이사의 대리인)** 이사는 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2012. 4. 9 개정)

**제25조(이사회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
3.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차입
4. 협회의 일상운영에 따른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5.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
6.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
7. 회원의 복리, 포상 및 징계
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9. 지회의 설치
10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11.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위촉
12.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나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

**제26조(의사록의 작성)**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 6 장 재산 및 회계

**제27조(재산)**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2. 회비수입금

3. 사업수입금
4.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수입금
5. 기타 수입금

**제28조(잉여금의 처분)** ①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1할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.

**제29조(회계년도 및 회계원칙)** ①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협회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30조(회계의 구분)**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일반회계는 회비수입을 주된 재원으로한 목적사업수행에 따른 회계를 말하며,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로부터의 기부금이나 분담금, 부담금 또는 정부등의 보조금등으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회계를 말한다.

**제31조(수익사업의 운영)** ①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협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협회재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협회는 수익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한다.

**제32조(예산외의 채무의 부담등)** 협회는 예산외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집행후에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33조(예산 및 결산)** ①회장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관·항·목으로 구분한 수입지출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2000. 3. 29 개정)

②수입은 회비수입·사업수입·재산의 과실수입·보조금 및 분담금 등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- ③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
- ④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 경비는 3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. (2001. 3. 7 개정)
- ⑥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- 1. 사업보고서
  - 2. 재산목록
  - 3. 대차대조표
  - 4. 수입지출결산서
  - 5.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안

## 제 7 장 포상 및 징계

**제34조(포상)**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제도 또는 협회의 사업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. (2001. 3. 7 개정)

**제35조(징계)** ①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- 1. 회원이 정관에 정한 의무에 배치하여 회원의 단결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
  - 2.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
  - 3.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2회이상 체납한 때
  - 4. 기타 정관이 정한 의무를 태만이 한 때
-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경고
- 2.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3회 이내의 출석정지
- 3. 회원·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정지
- 4. 회원·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박탈

③ 회원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보 칙

**제36조(사무기구)** 협회의 사무기구의 조직, 인원 및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**제37조(고문 및 자문위원)** ①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 
②고문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8조(협의회 등의 설치)** ①협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야별로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39조(시행세칙 등)**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특별회원에 대한 경과조치)** ①이 정관 시행당시 특별회원인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.  
③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정관 시행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협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승인할 수 있다.

**제3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등에 관한 특례)** ①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.

②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재임중인 임원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③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(회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선임은 이 정관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임부회장·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, 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(회장을 포함한다.)이내의 임원선임전형위원회(회장이 위원장이 된다.)에서 행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중인 임원이 해임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전형위원회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**제4조(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)**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선임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## 부 칙 < 2000. 3. 29 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0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)** ①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정관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은 이 정관이 시행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②이 정관 시행이전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 < 2001. 3. 7 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 2002. 3. 13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특례)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20조 제2항 및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정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회장이 대의원선출 전형위원회(회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)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.

부 칙 < 2003. 3. 20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 2005. 3. 9 >

이 정관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 2007. 2. 26 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정관에 따른 “한국건설관리협회”는 이 정관 시행이전의 다음 각호에 따른 “건설사업관리협회”로 본다.

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협회
2. 각종 법령에 따라 기재된 건설사업관리협회
3.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재된 건설사업관리협회

부 칙 < 2012. 4. 9 >

이 정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 2013. 5. 1 >

이 정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 2022. 7. 21>

이 정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